



제1703호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6 4 4 호 공인 신조 공고	민 원 봉 사 과 2
○ 공	고 제 1 6 4 5 호 취득세 9월 공시송달	세 무 과 3
○ 공	고 제 1 6 5 6 호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기 획 예 산 과 4
○ 공	고 제 1 6 5 9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02
○ 공	고 제 1 6 6 6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05
○ 공	고 제 1 6 7 3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자 동 차 관 리 과 212
○ 공	고 제 1 6 7 4 호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시송달 공고	생 활 경 제 과 214
○ 공	고 제 1 6 7 5 호 남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227
○ 공	고 제 1 6 7 6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240
○ 공	고 제 1 6 7 7 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250
○ 공	고 제 1 6 7 8 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269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8 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83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9 호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90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0 호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98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1 호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17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2 호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25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3 호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33
○ 의회사무국공고 제 2 4 호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43
○ 보 건 소 공 고 제 8 3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361

고 시

○ 고	시 제 9 2 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토 지 정 보 과 362
○ 고	시 제 9 4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364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64호

공인 신조 공고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인 신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1.

남동구청장

○ 공인 신조 사유

-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구입에 따른 신조

○ 공인 최초 사용일 : 2022. 9. 5.

○ 신조 공인 수 : 4개

○ 신조 공인내역

연번	구분	기 관 (부서명)	공인명	인영	서체 및 규격 (cm)
1	신조 공인	간석4동	간석4동장인 (간석4동통합 민원3)-종		2.4cm x 2.4cm 고인체
2	신조 공인	간석4동	간석4동장인 (간석4동통합 민원3)-형		2.4cm x 2.4cm 고인체
3	신조 공인	간석4동	남동구청장인 (간석4동통합 민원3)-종		3.0cm x 3.0cm 고인체
4	신조 공인	간석4동	남동구청장인 (간석4동통합 민원3)-형		3.0cm x 3.0cm 고인체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645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김**현 외 14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서 류 의 내 용 취득세 수시분, 독촉분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령인없음”,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 9.

남동구청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 - 1656 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2022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	기 획 예 산 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재 무 과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무 과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무 과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무 과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기 업 지 원 과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업 지 원 과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생 활 경 제 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복 지 정 책 과
남동구 늪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노 인 장 애 인 과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 소 행 정 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 시 재 생 과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남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 시 재 생 과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공 영 개 발 과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축 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 통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공 통

2022년 9월 2일

남 동 구 청 장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2658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1. 제출사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A)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율 (%)	비고
합 계	1,157,180,796	1,089,741,430	67,439,366	6.19%	
일 반 회 계	1,132,486,434	1,071,315,350	61,171,084	5.71%	
특 별 회 계	24,694,362	18,426,080	6,268,282	34.02%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302,454	302,454	0	0.0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18,200	18,200	0	0.00%	
의 료 급 여 기 금	1,823,257	1,737,426	85,831	4.94%	
지 하 수 리 관	269,779	272,000	△2,221	△0.82%	
주 차 장	22,280,672	16,096,000	6,184,672	38.42%	

3. 첨부서류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2659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의회의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서에 대하여 최종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5건), 기금(7종)
○ 세입·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서 및 첨부서류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사업비 (D)	보조금반납금 (E)	순세계잉여금 (F=C-D-E)
계	1,302,634	1,147,091	155,543	73,047	12,695	69,801
일반회계	1,264,253	1,120,846	143,407	69,623	12,581	61,204
특별회계	38,381	26,245	12,136	3,424	114	8,598

- 기금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 년 도 증 감 액(B)			2021년도말 조성액 (A + B)
	계	조 성 액	사 용 액	
31,860	8,517	14,604	6,086	40,377

- 재무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A)	총부채 (B)	순자산 (C=A-B)	총수익 (D)	총비용 (E)	운영차액 (F=E-D)
2021년	2,903,089	38,735	2,864,354	1,147,967	1,090,421

☐ 참고사항

- 결산검사 기간 : 2022.4.1.~2022.4.20.(20일간)
- 결산검사 위원 : 이용우 대표위원, 이봉훈 위원, 김순민 위원, 신해철 위원, 민상원 위원

☐ 붙임서류

- 2021회계연도 결산서
-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9. 14.(수) ~ 9. 29.(목)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2022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 (기획예산과)	 5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	 17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29
■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65
■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79
■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87
■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기업지원과)	 95
■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지원과)	 101
■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생활경제과)	 115

【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복지정책과)	 125
■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장애인과)	 135
■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151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시재생과)	 159
■ 남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재생과)	 167
■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공영개발과)	 175
■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193

【 총 무 위 원 회 】

2022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

2022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안 번호	2642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출사유

- 구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 및 체육, 보건시설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세대통합형복합시설건립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부족재원을 마련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2항에 따라 「2022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채 발행계획(안) 규모

(단위 : 억원)

부 서 명	사 업 명	발 행 계획액	차입선	발행조건		
				이율 (%)	상환 기간	상환 재원
합 계	2건	23.2				
공 영 개 발 과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15	청사정비기금	기준금리 + 0.25%	2년거치 10년상환	구비
		8.2	공공자금관리 기금	분기 공시이율	5년거치 10년상환	구비

* 기준 금리 변경에 따라 발행 시 이율 변경

☐ 채무전망 및 채무비율

- 2022년도 지방채 발행(23.2억) 시, 2022년말 채무비율은 1.43%로 예상되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1%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

-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 운용
- ◇ 투자수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체계적인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

I 발행계획 수립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지방채의 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2022.7.)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II 필요성

- 구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 및 체육, 보건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대통합형복합시설건립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부족 자원 확보

III 발행계획

□ 총 괄: 2건, 총 23.2억 원

- 발행금액: 2건, 23.2억원(세대통합형복합시설건립)
- 한도 내 발행계획: 2건, 총 23.2억 원

(단위 : 억 원)

부 서 명	사 업 명	발 행 계획액	차입선	발행조건			행안부 승인
				이율 (%)	상환 기간	상환 재원	
합 계	2건	23.2					
공 영 개 발 과	세대통합형 복합시설건립	15	청 사 정 비 기 금	기준금리 + 0.25%	2 년 거 치 1 0 년 상 환	구비	'21년
		8.2	공공자금관 리 기 금	분기별 공시이율	5 년 거 치 1 0 년 상 환	구비	'22년

* 기준 금리 변경에 따라 발행 시 이율 변경

□ 지방채 발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현황(계획)			비고
		승인액	2021 발행액	2022.2회 추경발행 (예정)	
계(6)	115,074	15,320	12,816.2	2,320	
만수5동 복합청사신축	9,000	4,200	4,128	0	
간석4동 청사신축	11,500	1,000	1,000	0	
세대통합형 복합시설건립	38,274	4,000	2,500	1,500	'21년 승인
		820	-	820	'22년 승인
남촌도림동 청사신축사업	6,900	1,000	1,000	0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	35,000	2,500	2388.2	0	
구월우수저류시설	14,400	1,800	1,800	0	

* 세대통합형복합시설건립 21년 승인액 총 40억원 중 2021년 25억 발행, 22년 15억 이월 발행 예정

IV

채무관리계획

□ 채무현황 및 전망

(단위 : 억 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관리채무	128.16	151.36	140.68	125.32	109.96
일 반 회 계	128.16	0	0	0	0
발 행	128.16	23.2	0	0	0
일 반 회 계	128.16	23.2	0	-	-
채무상환	0	0	10.68	15.36	15.36
원 금	0	0	10.68	15.36	15.36
이자상환	0.08	1.62	1.45	1.31	1.15
재정규모	11,864	10,552	10,683	11,028	11,246
관리채무비율	1.08%	1.43%	1.32%	1.14%	0.98%

* 채무비율은 재정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22년 재정규모는 1회 추경기준, 그 이후는 22~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발행전망 및 채무비율

- '22년 세대통합형복합시설건립 지방채(23.2억원) 추가 발생 시 채무비율은 1.43%으로,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및 조기 상환 검토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향후 1%대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1년) 1.08% → ('22년) 1.43% → ('23년) 1.32% → ('24년) 1.14% → ('25) 0.98%

□ 기타 채무관리방안

-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 불요불급한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 상환
 -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지방채 정기상환
 - 여유재원 발생 시 지방채 조기상환 적극 추진
- 채무 상환재원 확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 사업의 시급성 검토 등을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관리 강화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상환재원 확보

참고

세대통합형복합시설건립

부서명

공영개발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2023. 6.
- 사업내용 : 체육센터(수영장 등),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 사업규모 : 건축면적 2,726㎡, 연면적 6,062㎡(지하1/지상3)
- 총사업비 : 38,274백만원(국비 6,930 / 시비 3,985 / 지방채 4,820 / 구비 22,539)
- 위 치 : 인천 남동구 서창동 680번지

□ 사전절차이행(2022. 발행)

중기계획 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고
반영('21.~'25.)/('22.~'26.))	이행('19.3차)	설계완료	

□ 2022년 지방채 발행액: 23.2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총사업비)	기투자	2022	2023
계	38,274	29,315	7,613	1,346
국 비	6,930	4,930	2,000	
시 비	3,985	2,709	1,276	
구 비	22,539	19,176	2,017	1,346
지방채	4,820	2,500	2,320	0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년: 토지매매계약체결, 중앙투자심사 승인
- 2020. 5.: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9.: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21. 10.: 공사 착공
- 2023. 6.: 공사 완료

참고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발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2019.5.17.)>

◇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

- 투자심사 시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상 재심사 대상
- 다만,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50% 범위 내(광역시 및 대도시 60%) 지방채 발행 가능

* 실시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사례 1) oo광역시 국비 50억, 지방비 50억으로 승인받은 경우 30억 발행 가능

사례 2) oo군 국비 50억, 지방비 50억으로 승인받은 경우 25억 발행 가능

◇ 지방채발행계획이 있었던 경우

- 동 심사 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범위내 재심사 없이 지방채 증액 가능

사례 3) 국비 50억, 지방비 30억, 지방채 20억으로 승인받은 경우 6억 추가발행 가능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의안 번호	2643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위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사업계획 수립 당시 공사비 과소 책정에 따라 이후 원자재 원가 상승, 상인회 요구로 인한 연면적 증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 등 총 사업비 변경

□ 주요내용

- 사업목적 :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통해 시장 방문고객 편의 증진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사업위치 : 구월동 1173-15번지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개요

(단위 : m² / 천원)

구 분		당 초(안)	변 경(안)	비 고
사업 규모	위 치	구월동 1173-15	좌 동	-
	대지면적	261.5m ²	좌 동	-
	규 모	· 지상1층~지상4층 · 연면적: 28.84m ²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576.02m ²	(증가) 47.18m ²
소요 예산	총사업비	2,297,788	3,500,000	(증가) 1,202,212
	보 상 비	1,400,000	1,400,000	보상완료
	공 사 비 (설계, 감리 포함)	897,788	2,100,000	(증가) 1,202,212
	소요 재원	· 시비 1,838,230 · 구비 459,558	· 시비 1,838,230 · 구비 459,558 · 특교금 500,000 · 특교세 702,212	

※ 총 사업비(공사비) 증가 사유

- 상인회 요구에 따른 연면적 증가(47.18m²), 철근 등 원자재 원가 상승
- 사업 계획 당시 설계비, 철거비를 제외 하였을 경우 131만원/m²으로 공사비 과소 책정
- 최근 유사 시설 평균 공사비 350만원/m²으로 철거비, 설계비 등 모두 포함시 2,100백만원 필요⇒ 공사비 1,202백만원 증액 발생

○ 시설현황

층별	용도	세부용도	면적(m²)
지하1층	창고시설	· 창고시설, 전기실, 계단실	107.00
1층	근린생활시설	· 고객쉼터, 공동배송창고, 홀, 계단실, 주차장	115.40
2층	근린생활시설	· 교육장 및 행사장, 상인회 사무실 등	142.00
3층	근린생활시설	· 창업지원센터, 공유주방	142.00
4층	근린생활시설	· 고객쉼터	69.62
연면적			576.02

□ 추진현황

- 2021.10월 : 매매계약 체결(구월동 1173-15번지)
- 2021.12월 :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주 완료
- 2022. 2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5월 : BF 예비인증 접수

□ 향후계획

- 2022.10월 : 실시설계 완료
- 2022.12월 : 공사 착공
- 2023. 6월 : 공사 준공
- * 향후계획은 사정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유재산 (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부서명 : 생활경제과]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73-15번지					
토	지	지	목	면적 (㎡)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가격(천원)
		대지		261.5	남동구 (인천광역시)	2021.12.15	1,400,000
건	물	연	면	적	576.02㎡ (건축면적 142.00㎡)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토 지 매 입 비		1,400,000천원(완료)					
총 건 축 비		2,100,000천원					
사 업 기 간		2021 ~ 2023. 06.					

[위 치 도]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촌동 원도심 저층주거지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의안 번호	2643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촌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대상지는 인구성장 정체, 지방경제 침체, 생활 인프라 열악 등 쇠퇴가 지속되고 있으며,
- 구역 내 주민편의시설 부족 및 정주 환경 약화에 따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마을공동체의 활동 거점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촌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주민 공동이용시설 신축
- 사업위치 : 남촌동 265-1, 265-2
- 사업기간 : 2022 ~ 2023
- 계약방법 : 경쟁입찰(예정)
- 사업규모

구 분		비 고
사업 규모	위치	남촌동 265-1, 265-2
	대지면적	490㎡
	연면적	276.3㎡
	규모	-지상1층: 마을카페, 빨래방, 레고방(77.1㎡) -지상2층: 문화프로그램실, 공동주방(199.2㎡)

- 사업예산 (단위: 천 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2022년(부지매입)	2023년(건축비)
소계	2,700,000	1,600,000	1,100,000
시비(90%)	2,430,000	1,440,000	990,000
구비(10%)	270,000	160,000	110,000

□ 추진계획

- 2022.10. : 협의보상완료
- 2022.10. ~ 2023. 3. : 실시설계용역
- 2023. 4. ~ 2023.12. : 공사

공유재산 (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남촌동 원도심 저층주거지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남동구 남촌동 265-1외 1필지					
토	지	지	목	면적 (㎡)	소 유 자	취 득 년 월 일	대장가격(천원)
		대		490	남동구	2022.10.	1,603
건	물	연	면	적	276.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토지매입비		1,600,000천원					
총 건축비		1,100,000천원					
사업기간		2022.10.~2023.12.					

[위치도]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현황)

[남동구]

[단위 : m², 천원]

구분	사 업 명	소재지	건수	면 적	공시지가	예정가격	사유	비고
합 계			3	토지490 건물852.32		토지1,600,000 건물 3,200,000		
기 본 계 획	구월도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구월동 1173-15	1	건물 : 576.02		건물 2,100,000	구월도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토지 취득완료/ 변경안
	남촌동 주민공동이용 시설 신축	남촌동 265-1 265-2	2	토지 : 490 건물 : 276.3	토지 1,603	토지 1,600,000 건물 1,100,000	주민공동이용 시설 신축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기관명 : 남동구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 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m ²)	금액	건수	수량(m ²)	금액	건수	수량(m ²)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1,342.32	4,800,000	3	1,342.32	4,8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490	1,600,000	1	490	1,60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2	852.32	3,200,000	2	852.32	3,2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 련 번 호	재 산 의 표 시			취 득 수 량	추 정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량						
1	대	구월동 1173-15	576.02	576.02	2,100,000	2022~ 2023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남동구청장	토지(구유지) 건물 신축
2	대	남촌동 265-11,12	766.3	766.3	2,700,000	2022~ 2023	남촌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남동구청장	토지(공○용), 건물 신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4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4. 21.)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및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 안 제6조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 신설 : 안 제11조
 -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개정 : 안 제15조 외 9개조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사항 규정 반영
 -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설 : 조례안 제19조의2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갱신 조항 신설 : 조례안 제21조의2
 - 일반재산의 대부 시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신설 : 조례안 제27조의2
 -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사항 추가 신설 : 조례안 제31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조항 추가 신설 : 조례안 제39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제7조의2제4항”을 “제10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제4호”를 “법 제16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중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중요 사항”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또는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면적이 1천 제곱미터, 토지처분의 경우 1건당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15조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익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20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수익 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구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단서 중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를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27조의2(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 등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12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

용·수익하도록”을 각각 “사용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구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등을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6월 이내 3회 분납”을 “연 6회 이내 분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3호”를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을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5조 제2항”을 “영 제45조제2항”으로, “10년”을 “20년”으로 한다.

제39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제4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
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의 제목“(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공유
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
허가 또는”을 “사용허가 또는”으로, “사용·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 또는”을 “사용허가 또는”으로, “사용·
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한다.

②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사용·수익하려는”를 “사용하려는”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
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를 “(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③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별표 1]

공용면적 산출 산식(제30조 관련)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제 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남동 구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 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시행령」----- ----- 제10조의3제4항-----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삭 제>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자격요건) 영 제7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 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2(자격요건) 영 제10조의3 제1항제3호----- ----- -----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 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 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 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 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u>	2.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 5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u>사항</u> <u>3.일반재산의 용도변경</u> 4. (생략) ② (생략)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u>중요 사항</u>을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u>실시</u>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임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u><삭 제></u>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 ----- ----- -----. 제7조(실태조사) ① ----- ----- ----- ----- <u>실시</u>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
<u><신 설></u>	②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

현행	개정안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u>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u>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재산에 한하며, 해당 토지는 유상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u>사용·수익허가의 제한</u>)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u>사용·수익허가</u> 하여서는 아니된다.	<u>격 또는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u> 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면적이 1천 제곱미터, 토지처분의 경우 1건당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 <u>무상사용허가대상</u>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u>사용허가의 제한</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사용허가</u>----- -----
제19조(<u>사용·수익허가</u>) 행정재산을 <u>사용·수익허가</u>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9. 6. 19.)	제19조(<u>사용허가</u>) ----- --- <u>사용허가</u>----- ----- -----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사용·수익허가</u> 재산의 보존 의무	5. <u>사용허가</u> ----- -----
6. <u>사용·수익허가</u> 재산과 관련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u>사용허가</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u>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u>)	제19조의2(<u>수익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u>) ① ----- ----- ----- ----- <u>사용</u> -----.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u>사용·수익</u> 을 허가 할 수 있다.	① 영 제13조제3항제24호-----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 ----- -----.
1. 구급고로 지정된 은행에 <u>사용·수익</u> 을 허가하는 경우	1. ----- <u>사용</u> -----
2.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수입기관에게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공간을 <u>사용·수익</u> 허가하는 경우	2. ----- ----- ----- ----- <u>사용허가하는</u> ----- --
<신설>	3. <u>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구유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u>

현행	개정안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허가부</u> 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u>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u> <u>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u>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 -- <u>사용허가부</u> ----- -----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u>사용·수익허가</u> 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 ----- <u>사용허가</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u>사용·수익허가</u>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u>사용허가</u> ----- ----- ----- ----- ----- ----- -----.
④·⑤·⑥ (생략)	④·⑤·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현행	개정안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u>사용수익허가</u> 와 관련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u>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u>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u>사용허가</u> ----- -----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u>지방산업단지</u> ,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제27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현행	개정안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9, 일부개정 2015. 7. 31, 일부개정 2018.3.20, 2019. 7. 12.)	3. -----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제27조의2(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영 제29조제1항 제28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 ----- ----- ----- ----- ----- ----- 감정평가법

현행	개정안
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② 삭제 ③ (생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u>,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u>사용·수익허가</u>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	<u>인등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이</u>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감정평가법인등</u>----- ----- -----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 ----- <u>사용허가</u>-----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 ----- -----

현행	개정안
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③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u>사용·수익</u>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은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u>사용·수익하도록</u>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1. 2. (현행과 같음) ③ ----- <u>사용</u>-----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사용하도록</u> ----- ----- -----.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u>사용·수익하도록</u>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⑥ ----- ----- ----- ----- <u>사용하도록</u> ----- ----- -----. 1. ~ 4. (현행과 같음) ⑦ 구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등을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

현행	개정안
<u>수익허가 및 대부</u>)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채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u>사용·수익허가</u>,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u>사용·수익허가</u>,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략)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u>사용·수익허가</u>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와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을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u>가 및 대부</u>) ① ----- ----- ----- <u>사용</u> <u>허가</u>-----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사용</u> <u>허가</u>----- -----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 <u>사용허가</u>----- ----- ----- ----- -----.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일부개정 2018.3.20, 2019. 7. 12.) 1. (생략) 2. 100만원 초과 : <u>6월 이내 3회 분납</u>	1. ~ 3.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연 6회 이내 분납</u>
3. <u>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u> ③·④ (생략)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u>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u>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 ----- ----- ----- ----- ----- ----- <삭 제>

현행	개정안
<u>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u> 2. 3. (생략)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생략)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③·④ (생략)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	2. 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 -----.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 ----- 10년 ② ----- 영 제4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u>10년</u>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u>20년</u> ----- ----- ----- -----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일부개정 2013. 12. 27, 전부개정 2016. 3. 11., 2019. 7. 12.) 1. ~ 6. (생략) <u><신설></u>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u> 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u><신설></u>	8. <u>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u>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u> <u>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u>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 ----- --.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 ----- ----- ----- -----.

현행	개정안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 한 <u>감정평가업자</u> 에 의뢰한다.	----- ----- ----- ----- -- <u>감정평가법인등</u>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재정경제국 재무과장 양한목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22. 4. 21.][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6. 생략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4. 21.][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3. 생략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을 갹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익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27. 생략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제38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22. 생략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시행 2019. 12. 1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2019. 12. 9., 일부개정]

-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5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22. 4. 21.시행)에 따라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의 분실·훼손 시 조치 방법과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방법을 신설하고, 용어의 순화 및 문장을 간결·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제2항 개정에 따른 물품 분실·훼손 시 조치방법 추가 (안 제2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른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방법 신설 (안 제3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 (안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3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제9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3조제1항 중 “밖의 출납보관”을 “밖에 출납 및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을 “물품관리 등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사무”로 한다.

제14조제2호 본문 중 “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사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액과 노임”을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액에 임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영 제78조제2항”을 “영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를 “(물품의 분실훼손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망실·훼손”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망실·훼손하였”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제1호 중 “망실하였”을

“잃어버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없을 때에는”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 중 “이외의”를 “이외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없을 때에는”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3조 중 “없을 때에는”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물품출납 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입	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수	수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용	용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산	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입	입	공유재산으로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생	생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도	도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여	여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	입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매각	각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체	체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기	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분실	실	잃어버린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납	납	사용 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관급	급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	모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리전환	환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류전환	환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용전환	환	동일 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무상증여	여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증	증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건	건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이동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u>밖의</u> <u>출납보관에</u>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u>물품관리에</u> <u>관한</u> <u>사무를</u>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u>물품의 관리</u> <u>등에</u> <u>관한</u>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생략)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u>관한</u> <u>사무의</u>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u>사용</u> <u>직공으로</u> 하여금 제작하게 한	<u>제1장 총칙</u>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 ----- <u>밖에</u> <u>출납 및 보관</u>----- --. ② ----- ----- <u>물품관리사무</u>----- -----. ③ ----- ----- ----- <u>물품관리 등의</u> -----.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물</u> <u>품관리사무</u>----- -----. 제14조(물품의 가격) ----- -----. 1. (현행과 같음) 2. ----- ----- <u>금액.</u> -- <u>외부에</u> <u>의뢰하여</u> 제작한 경우에는 원

현행	개정안
<u>것은 원료가액과 노임</u> 3. ~ 7. (생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매각이 <u>부적당하다고</u>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u>영 제78조 제2항</u>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u>료가격에 임금을 가산한 금액</u> 3. ~ 7.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적당하지 않다고</u>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영 제78조 제4항</u>----- ----- -----.
⑤ ~ ⑧ (생략)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u>규칙</u>이 정하는 불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 ----- ----- <u>규칙</u>으로 -----

현행	개정안
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u>망실·훼손</u>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u>망실·훼손</u>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u><신설></u>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① ----- 잃어버리거나 훼손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 ----- -----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 ----- ----- -----.

현행	개정안
1. 물품을 <u>망실하였을</u>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u>훼손하였을</u>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u>없을</u>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u>이외의</u>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u>없을</u>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	1. ----- <u>잃어버렸</u>----- ----- -----. 2. ----- ----- -----. ③ 제2항----- ----- -----.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이외에</u> -----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 ----- ----- <u>없으면</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

현행	개정안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 없 으면 ----- ----- ----- ----- ----- --.
<신 설>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 (생략)	제36조 (현행 제35조와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재정경제국 재무과장 양한목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6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 적용시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조항에 대하여 해당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3조, 제5조, 제6조의2)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의2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 ----- ----- ----- <u>-- 2024년 12월 31일--</u> ----- ---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 ----- -----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 -----.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감면기간 세입감소분 추계 결과

- 감면기간: 2023년 ~2024년 (2년)
- 감면내용: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감면추계: 20백만원

※ 감면추계는 2021년 감면액 산출, 그 외 조항은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비용발생이 예상되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세무과장 박종철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 ⑧ (생략)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7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
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의 인용 조문 정비함(안 제3조)
 - “법 제71조의2제1항” → “법 제103조의3제1항”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 정비함(안 제11조)
 - “규칙 제52조의3” → “규칙 제73조의8”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모집·선정하여 인천광역시”를 “모집·선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52조의3”을 “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끼진”을 “끼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u>법 제71조의2제1항</u> 에 따른 전문매 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 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u>모집·선정하여 인 천광역시 남동구</u> (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공 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 ----- ----- <u>법 제103조의3제1항</u> ----- ----- ----- ----- <u>모집·선정하여</u> ----- ----- ----- -----.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 전 2년 동안 <u>법제71조의2제1 항</u>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 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1. ----- ----- <u>법 제103조의3제1 항</u>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 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구청장 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규칙 제52조의3</u> 에 따른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 구) ① ----- ----- ----- ----- ----- <u>규칙 제73조의8</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4조(전문매각기관의 업무책임) ① (생략)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의 업무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끼친</u>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재정경제국 세무과장 박종철

[참고자료]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648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 안 이 유

- 공동브랜드 선정업체의 사용기간 만료(2021. 9. 30.), 상표의 대외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신청 저조 및 실효성 부족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원세부내역

년 도	예 산	집행액	지원내역	비 고
총 계	100,000	45,000	총 32개사	총 예산 중 45% 집행
2019	20,000	8,000	4개사*2,000천원	
2018	20,000	18,000	9개사*2,000천원	*신청저조로 인하여 업체당 보조금 증액(1백→2백)
2017	30,000	11,000	11개사*1,000천원	
2016	30,000	8,000	8개사*1,000천원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9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1.5.18.)에 따른 조례 개정
 -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 : (안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
- 기본계획이 아닌,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지원계획을 재난 발생시에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 : (안 제6조)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 : (안 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를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4조 중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본계획수립 등)”을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남동구 필수노동자”를 “재난 발생시 남

동구 필수업무 종사자”로, “기본계획”을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필수노동자”를 각각 “필수업무 종사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필수노동자”를 각각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으로, “지원에 필요한”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u>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필수업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

현행	개정안
<u>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u> 4. “대면업무”란 <u>지역사회에서 대중교통 운전자, 의료·사회복지·돌봄 종사자, 물류·배달업 종사자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u>	<u>하는 업무를 말한다.</u> 3. “<u>필수업무 종사자</u>”란 <u>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u>
제3조(구청장의 책무) <u>남동구청장</u> (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은 <u>필수노동자</u>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u>구청장은</u> <u>필수업무 종사자</u> ----- ----- ----- -----.
제4조(적용대상) 구청장이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u>필수업종</u>의 남동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u>필수노동자</u>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 ----- ----- ----- <u>필수업무</u>----- ----- <u>필수업무 종사자</u>----- -----.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u>필수업종</u> 선정, <u>필수노동자</u>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	제5조(실태조사) ① ----- <u>필수</u> <u>업무</u> 선정, <u>필수업무 종사자</u> -- -----

현행	개정안
우 남동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략)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등) ① ----- --- 재난 발생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② 지원계획----- -----. 1. 필수업무 종사자 ----- ----- 2. (현행과 같음) 3. 필수업무 종사자 ----- ----- 4. (현행과 같음) ③ ----- 지원계획----- ----- ----- --.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 필수업무 종사자 ----- ----- -----.

현행	개정안
1. <u>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u>을 위한 사업 2. <u>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u>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u>필수노동자</u>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4. (생략) 제8조(<u>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u>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u>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호의 재난 지정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에 따른 <u>필수업종 지정</u>에 관한 사항 3. <u>필수노동자</u>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 <u>필수업무 종사자</u>----- ----- 2. <u>필수업무 종사자</u> ----- ----- 3. ---- <u>필수업무 종사자</u> ---- ----- 4. (현행과 같음) 제8조(<u>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u>의 설치 및 기능) ① --- ----- ----- <u>필수업무 종사자</u> ----- -----.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u>필수업무 범위</u>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u>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u>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u>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u>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u>필수노동자</u> 보호 및 <u>지원</u>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4. ----- <u>필수업무 종사자</u>에 대한 ----- <u>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u> ---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u>필수노동자</u>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 <u>필수업무종사자</u> ----- -----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김 종 화

[참고자료]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50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2. 4. 28.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에 따라 필요한 조문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안 제1조)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 (안 제2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 (안 제3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 (안 제4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 (안 제5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3조, 제25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남동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참고자료]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 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경영지원 사업
 4. 환경·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

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651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상세 내역 별도 책자 확인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노 송 희

[참고자료]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남동구)

- ❖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
- ❖ 변화하는 복지환경을 반영하고 민관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사회보장 정책 관련 중기 이정표 역할 수행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35조
- 시행기간[수립시기] : 2023년 ~ 2026년(4년) [2022. 9월 수립]
- 목 표 :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남동구』
- 전략체계 : 5개 지자체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4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특징 및 방향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의 기본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구성의 논리성과 체계성 그리고 이행력 제고
- 국고보조사업인 보편사업을 배제하고 지역사업(지자체 자체 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 과정을 부각
- 복지부문 뿐만 아니라 보건, 고용, 교육,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통합성을 높여 사업 기본 방향 설정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체계도(기본 방향)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남동구

I.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II.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어울림 공동체 실현	두루두루 안전한 건강 공동체 구축	같이 꿈꾸는 활기찬 경제 공동체 구축	함께 돌봄으로 누구나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축	언제 어디서나 배우며 즐거는 평생배움 공동체 실현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 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I-1-1 북한이탈 주민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중점추진) I-1-2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중점추진) I-2-1 구민건강 증진 위한 만성질환 관리 (중점추진) I-2-2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중점추진) I-3-1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중점추진) I-3-2 공동브랜드 식품 '소래찬 김치' 판매 활성화	(중점추진) I-4-1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중점추진) I-4-2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 지원	(중점추진) I-5-1 인생 사계학교 운영 (중점추진) I-5-2 생활형 다목적 경로당 확충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II-1-1-1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운영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I-2-6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예방	대표과업 1.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II-2-1-1 민관복지 협업을 통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활성화 II-2-1-2 사회복지 종사자 치우개선	대표과업 1. 사·군·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II-3-1-1 민관협력 구심점으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축, 운영 II-3-1-2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업 지원	대표과업 1. 지역돌봄 인프라 강화 II-4-1-1 장애인주간보 호시설 운영 지원 II-4-1-2 복지관 기능 강화
I-1-3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강 지원	I-2-3 화재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	I-3-3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중점추진) I-4-3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운영 내실화	I-5-3 공립 작은도서관 확충 및 남동구 스마트 도서관 운영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 2.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남동구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2. 문화여가 인프라 강화
I-1-4 주민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추진	I-2-4 아동 보호구역 설치	I-3-4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원	I-4-4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I-5-4 아동이 주도하는 어린이 축제 개최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 2.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남동구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2. 문화여가 인프라 강화
I-1-5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추진	I-2-5 찾아가는 경로당건강이 동진료로 맞춤형 건강관리	I-3-5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연계	I-4-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I-5-5 남동 생활문화 센터 운영	II-1-2-1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위한 홍보	II-2-2-1 민관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II-3-2-1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지원	I-5-2 생활형 다목적 경로당 확충
I-1-6 아동친화도시 조성 세부과제 이행	I-2-6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예방	I-3-6 지역주민 고용기업 매칭 확대	I-4-6 결식아동 급식 지원	I-5-6 소래포구 축제 확대 개편	II-1-2-2 생계급여 부정수급 방지	II-2-2-2 민관이 함께 만드는 아동친화 도시	II-3-2-2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량강화	II-4-2-2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I-1-7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및 육아학교지원	I-2-7 자원재활용 (자원순환) 교실 운영		I-4-7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대표과업 3. 장애특화 인프라 확충 II-4-3-1 뇌병변 장애인발달재 활센터 설치 및 운영 II-4-3-2 무장애놀이시 설 운영

☐ **행정·재정계획**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등 지역사회 케어체계 구축
- 2023년 주요 복지사업 예산 반영

☐ **민관협력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방안**

- 지역사회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협의체 역량 강화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개최 확대
- 동 인적안전망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 사회복지명예공무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인적 자원 활용

☐ **시행계획 자체평가 계획**

- 평가시기 : 시행년도 다음해 2월까지 실시
- 평가방법 : 사업부서의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의 평가

[관련 법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652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훈련을 통해 사회적응을 향상시키고, 발달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 3월에 개관 예정인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남동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3. 1. ~ 2026. 2. 28. 예정 [3년]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면 적	종사자	이용정원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수산동 13-1 (1층 일부)	550㎡	12명	30명

- 위탁사무 : 늘품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운 영 비 : 524,000천원 (시비50 / 구비50)
- * 2023.3월 개관 기준 2022년 기준 예상액이므로 추후 운영 세부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건비 474,000천원 / 운영비 50,000천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참고자료

- 붙임1: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2 : 관련 법령 1부.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 조문

-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운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나.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으로 함
-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2023년 3월 개관 예정으로 2023년 비용 추계 시 적용
- 조례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에 의거,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산정
 - 인건비 : 2022년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원봉급 기준
 - 운영비 : 2022년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기준

나. 추계 결과

○ 발생비용 : 1,781,942천원

○ 항목별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781,942	523,847	625,533	632,562
인 건 비	1,626,477	473,847	573,733	578,897
관리운영비	155,465	50,000	51,800	53,665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인상을
(인건비 0.9%, 관리운영비 3.6%)을 적용하여 2023년~2025년 비용
추계 적용

다. 재원조달 방안

○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 시비 50, 구비 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김 진 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261,924	312,767	316,281	890,972
세 출			523,847	625,533	632,562	1,781,942
재원 조달			523,847	625,533	632,562	1,781,942
의존 재원	소 계		261,924	312,767	316,281	890,972
	보조금	국비				
		시비	261,924	312,767	316,281	890,972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261,923	312,766	316,281	890,970
	지방세		261,923	312,766	316,281	890,97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1]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 위탁 추진계획(안)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운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2022년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

II

추진방침

-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행정의 투명성 향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하여 2개 법인 이상이 신청하여야 함.
 - ※단독 신청의 경우 1회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 추가 신청자 없이 단독 신청의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평균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수탁자의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적의 수탁자 선정

Ⅲ

위탁대상 시설현황

○ 대상시설 :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소재지	규모	운영공간	비고
수산동 13-1 (신축 노인복지관 1층)	550m ²	특수교육실, 교육실, 심리안정실, 다목적실, 식당, 사무실	

○ 위탁기간 : 2023. 3. 1. ~ 2026. 2. 28.(3년) 예정

○ 지원사항 : 인천시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인력구성 : 12명

계	시설장	교사	사무원	비고
12명	1명	10명	1명	

○ 운영 규모 : 30명 [5개 반 / 반별 정원 6명]

○ 위탁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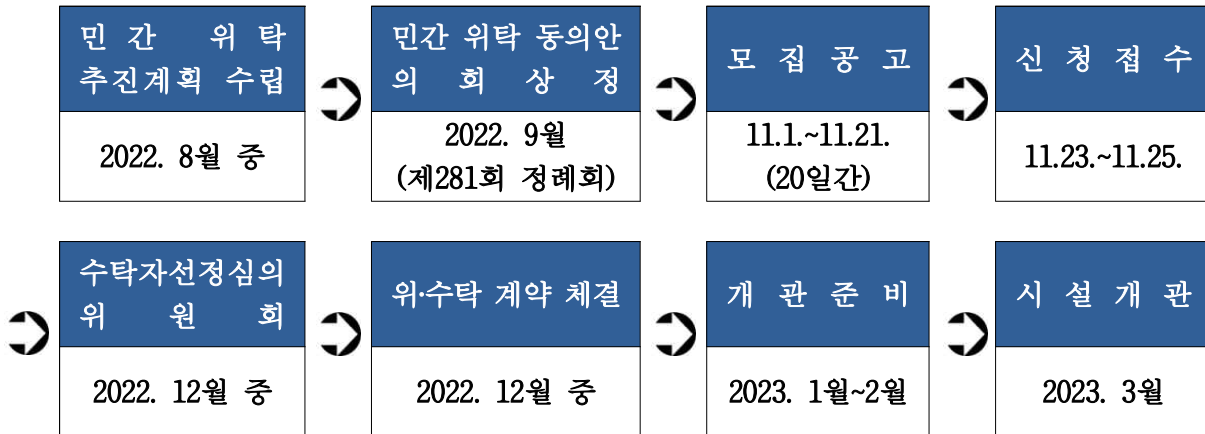
-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및 지역사회 적응 활동 지원
-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신축 중인 남동구 노인복지관 1층에
설치 중인 시설로,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담당자 간 협업 필요

IV

세부추진계획

□ 추진 일정



① 민간 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근 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시 기 : 제281회 남동구의의회 정례회(2022. 9. 14. ~ 2022. 9. 29.)

< 민간 위탁 동의안 주요내용 >

- ▶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 2022년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
- ▶ 추진 필요성 :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질적 향상 도모
- ▶ 소요예산 : **524,000천원**(인건비 474,000천원/운영비 50,000천원)
(※ 2023년 3월 개관예정. 2022년 기준 예상액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2. 11. 1. ~ 11. 21. (20일간)
- 접수기간 : 2022. 11. 23. ~ 11. 25 (3일간)
- 접수장소 : 남동구청 1층 노인장애인과 (☎032-453-2522)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 ▶ 접수서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인터넷 또는 우편 접수 불가

※ 단독 신청 시 1회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1개 법인이
신청할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단, 심의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다수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 할 경우에도 재공고함.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규정)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
리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 수탁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조직, 예산을 갖춘 법인
 - *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의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의대
상에서 제외하며 부적격 처리함.

○ 제출서류 및 서식 : [붙임2] 참조

- | | |
|-----------------------------------|---------------|
| ㉠ 수탁 운영신청서 | ㉡ 법인 현황 관련 서류 |
| ㉢ 법인 자산현황 | ㉣ 시설 운영계획서 |
| ㉤ 위탁운영 및 재정부담 의결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 |
| ㉦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및 심의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 위원회 구성 : 8명

- 당 연 직 : 2명(부구청장, 주민복지국장)
- 위 축 직 : 6명(대학교수,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
- 간 사 : 1명 (노인장애인과장)

* 수탁자 선정 후 자동해산

구 분		인원	대 상 자	비 고
계		8명		
위원장	공무원	1명	부구청장	당연직
위 원	공무원	1명	주민복지국장	당연직
	공익단체	2명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	4명	대학교수 등 전문가	

* 수탁 신청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 12월 중
- 심의내용 : 심의기준(안) 결정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심의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에 따른 심사평가
 - 법인 발표자의 5분~10분간 시설 운영 의지 등 발표 청취
 - 법인 대표 또는 각 시설장(내정자)에게 운영 전망 등 질의응답
- 참석수당 : 100천원 범위 내 (1인 기준 / 공무원 제외)

구 분	참석수당		비 고
	기본(2시간)	추가	
지급액	70,000원	30,000원	초과는 1일1회만 지급

○ 위원회 심의기준(안)

구분	계	수탁법인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 협력관계
배점	100점	30점	50점	20점

※ [붙임4] 세부심사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심의기준별 항목 간 배점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수탁법인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나머지 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가장 높은 점수(소수점 두 자리 수)를 획득한 법인 선정

➡ **심의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최고점수가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만 재심의
- 신청법인 사업설명회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포기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여부 결정

4 선정결과 안내 및 위탁계약 체결

- 선정결과 안내 : 구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법인 개별 안내
- 위탁계약 체결 : 2022. 12월 중
- 시설 개관준비 : 2023. 1월 ~ 2022. 2월
- 시설 개관 및 운영개시 : 2023. 3월 예정

V 행정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촉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 명단
보안 철저
- 신청법인 사업설명 발표자료(PPT 등) 사전 점검

[붙임2]**1) 관련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운영)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1번지 일원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 받은 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53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22. 1. 10.)에 따라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규격을 조정하여 수집운반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폐기물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임 법령 사항 정비 : (안 제1조)
- 종량제 봉투 규격 조정 : (안 별표 5)
- 종량제 봉투 규격 조정에 따른 무게 상한 정비 : (안 제9조제3항)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22. 1. 10.)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을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와 같은 조례”를 “시
행령 및 같은 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사업계폐기물, 불연성생활폐기물”을
“가정사업계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
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공급된

100리터 공공용 봉투, 60·125리터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및 50리터

불연성폐기물 마대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과 무게 상한은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별표 5]

종량제 봉투의 규격 · 용도 및 연도별 가격(제14조제6항 관련)

단위(원)

구분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용 도
5 ℓ	210	230	일반용 봉투
10 ℓ	390	440	일반용 봉투
10 ℓ	390	440	재사용 봉투
20 ℓ	750	870	일반용 봉투
20 ℓ	750	870	재사용 봉투
50 ℓ (13kg)	1,850	2,170	일반용 봉투
30 ℓ	2,350	2,35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50 ℓ (13kg)	3,920	3,92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75 ℓ (19kg)	4,730	4,73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20 ℓ	2,200	2,200	불연성 폐기물 마대
50 ℓ (13kg)			공공용 봉투
75 ℓ (19kg)			공공용 봉투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u>시행령 및 같은 법</u> ----- ----- ----- ----- -----.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 ② (생략) ③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가정사업계폐기물, 불연성생활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1. (생략) 2. 60리터 : 15킬로그램 이하 3. 100리터 : 25킬로그램 이하 4. 125리터 : 32킬로그램 이하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가정사업계폐기물</u>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 <u><삭제></u> <u><삭제></u>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봉투 규격 변경에 따라 '21년 제작량을 기준으로 제작 비용 산출한 결과 아래와 같음

- 공공용 봉투 : 11,753,266원 절감
- 가정사업계폐기물 봉투 : 19,797,566원 절감
- 불연성폐기물 마대 : 5,100,000원 증가

즉, 26,450,832원이 절감되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청소행정과장 박 홍 순

[참고자료]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환경부, 2022. 01. 10.)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일반용 봉투 용량: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 재사용 종량제봉투: 3L, 5L, 10L, 20L, 30L
 - 공공용 봉투 용량: 30L, 50L, 75L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3L, 5L

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최대한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수거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
 - ※ 20L 규격 이하로 제작,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2654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간석동 353-4번지에 위치한 현 간석1동 청사는 1993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공간이 협소(연면적 1,525㎡)하여 편의시설 및 주민 자치공간 부족 등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상태임
- 따라서, 공공업무 효율성 증대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 질 높은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복지,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연면적 약 2,900㎡)을 계획함
- 현 부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인접 도로여건 등에 따른 허용용도 기준상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의 업무시설’은 설치가 불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통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규모)을 해소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안)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간석동 353-4번지	-	증)998.3	998.3	-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공공청사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 공공청사 신축 · 위치: 간석동 353-4번지 · 면적: 998.3㎡	-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에 건립된 노후건축물로 편의시설 및 주민자치공간 부족 등 시설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상태임 - 효율적인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청사부지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계획함 - 신축규모(연면적 2,858㎡)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통하여 용도지역(2종일반주거지역)에 따른 건축제한 해소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도



□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개요

1. 사업개요(안)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53-4번지	
부 지 면 적	◦ 998.3㎡	
용 도 지 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사 업 규 모	◦ 지하1층, 지상5층	
사 업 비	◦ 9,994백만원	
건 축 면 적	◦ 597.32㎡	
건 폐 율	◦ 59.83% ※ 법적기준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용 적 륜	◦ 208.73%(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2,083.79㎡) ※ 법적기준 :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연 면 적	◦ 2,885.57㎡ - 지상층 2,083.79㎡, 지하층 801.78㎡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주 차 대 수	◦ 법정 : 23대(2,321.51㎡÷100㎡=23.2) ◦ 계획 : 24대 설치 ※ 법적기준 : 업무시설 100㎡당 1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 건축계획(안)

구 분	내 용
계획시설	B1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창고
	1F 휴게음식점, 마을돌봄센터, 공유주방, 어울림거리 등
	2F 업무공간(직원 업무공간, 동장실, 상담실, 회의실, 문서고, 창고, 탕비실), 민원대기공간
	3F 다함께돌봄센터, 돌봄프로그램실, 실버평생교육실, 마을문화아카데미, 마을에듀, 동대본부
	4F 주민자치사무실, 건강증진실, 마을에듀
	5F 멀티프로그램실, 기자재실

3.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20. 6. :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 '21. 7. :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선정
- '21.11.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2. 2. : 설계용역 착수

□ 관련법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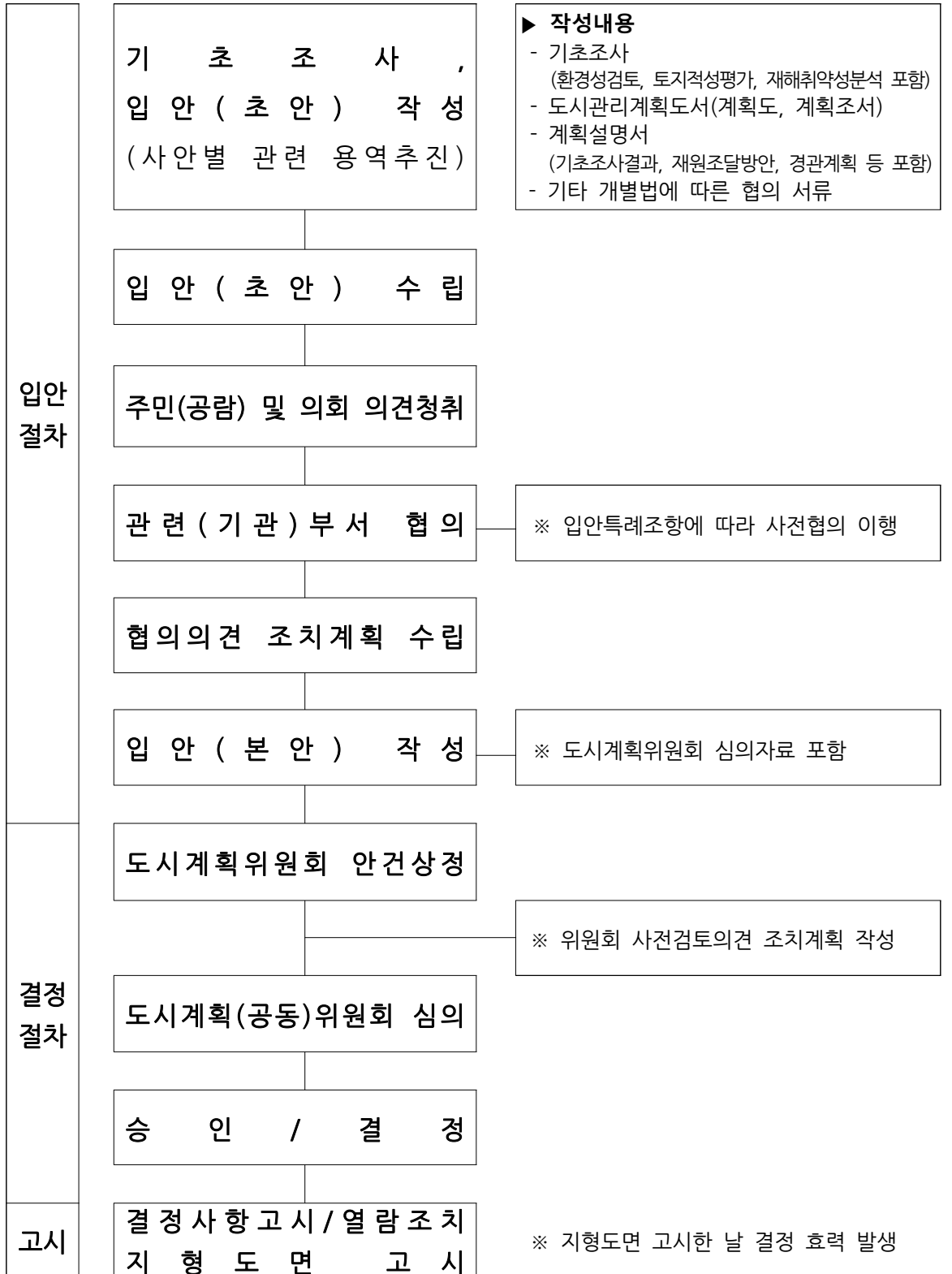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법제43조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공공청사)	
법제28조 령제22조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령제83조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법제13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제84조	☒ 권한의 위임 ○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3의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	
별표3 1. 가. (4)	☒ 권한위임 사무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무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공공청사(군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으로 한정한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 행정절차



※ 결정절차 상의 유관(기관)부서 협의는 법 제35조 입안특례 조항에 의거 입안절차시 사전협의로 대체

남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남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2655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촌동은 다가구·다세대가 밀집한 원도심 저층주거지로, 노후 기반시설, 골목 환경 등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행정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
-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주민공동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신청 전 지방의회 의견청취 의무화를 규정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별첨1]

□ 남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개요

- 사업명 : 남촌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93번길 일대[별첨3]
- 사업면적 : 44,925㎡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
- 총사업비 : 40억원(시비 36억원, 구비 4억원)

☐ 재원 계획

(단위 :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합계	4,000,000	293,000	2,027,000	1,680,000
시비	3,600,000	264,000	1,914,000	1,422,000
구비	400,000	29,000	113,000	258,000

☐ 사업 내용

계획 부문	단위사업	사업내용
A. 함께하는 자립마을	A-1. 남촌마을 주민이용 공동시설	커뮤니티센터 건립
	A-2. 공동 브랜드 개발	- 마을 컨설팅(브랜드, 마을기업관련) - 남촌 마을 음식경연대회
	A-3. 남촌주민 활동	- 도시재생대학 운영 - 주민활동 (마을신문, 기자단운영, 골목반상회, 재활용정거장)
B. 시니어 친화 마을	B-1. 시니어 돌봄사업	봄촌활동(시니어돌봄)
	B-2. 시니어 소통방	시니어 소통방 운영사업
	B-3. 아름다운 가게	리모델링 및 시니어창업교육
C. 활력있고 머물고 싶은 마을	C-1. 안전한 마실 길 조성사업	- 시니어 무장애길 조성 - 시간여행길 조성 - 이팔청춘 이음길 조성
D.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	D-1. 안전환경 조성사업	- 보안등 설치, 웨이파인딩 사인 - 도시가스메타함 보수설치
	D-2.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사업	- 공중폐전선 정비, RFID설치 - 마을경관색 가이드라인

☐ 추진사항

- 2021.01. : 2021년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공모 선정
- 2021.10. :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21.11.~12. : 마을계획 주민워크숍 (1차 ~ 6차)
- 2022.05. : 남촌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07.04. ~ 08.02.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공람 공고
- 2022.07. :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최종 주민설명회

☐ 향후 계획

- 2022.10.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11.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기대효과

-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원도심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 참고자료

1. [별첨1] 관계법령
2. [별첨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계획) 수립 절차
3. [별첨3] 구역지정도
4. [별첨4] 사업계획도(마스터플랜)

[별첨1]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 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첨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계획) 수립 절차

정비계획(안) 입안



주민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수렴(시장·군수·구청장 등)



정비구역 신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고시

[별첨3] 구역지정도



[별첨4] 사업계획도(마스터플랜)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2656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22. 3. 1. 시행)으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방식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7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과오납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부과대상)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

용·사용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2.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2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점

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 구청장은 동일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료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가산금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①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1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도 본 조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3조 관련)

구 분	산정방식 (단위 : 연간)
1. 잔교(殘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구조물·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들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鐵裝岸壁), 선가(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점용·사용	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 m ³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구 분	산정방식 (단위 : 연간)
	-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³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text{※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가.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인천광역시시장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구 분	산정방식 (단위: 연간)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 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³)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인천광역시시장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인천광역시시장의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기준표(제5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50%
2.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3.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 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감 면 대 상	감면율
8.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9.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제7호부터 제10호까지·제15호·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1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50%
1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50%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0%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3)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50%

[별표 3]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제6조 관련)

점용료·사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사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 ×{25/100+(증가율-500/100)×5/1,000}]

[별지 제1호서식]

접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부분)

제 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주 관		취급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세입징수관 인		

접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

제 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주 관		취급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세입징수관 인		

통지서

제 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하였으 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세입징수관 인		

영수증서

제 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세 입 징 수 관 계 좌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합니 다. 년 월 일 은행		

268mm×190mm(일반용지 5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점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도시건설국 공영개발과장 김 은 구

[참고자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57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2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허가 확대 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해체 건축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을 정함(안 제8조의2)
 - 일정 반경 내 특정한 시설물의 종류를 정함(안 제8조의2 제1항)
 -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정함(안 제8조의2 제2항)
 -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한 경우를 정함(안 제8조의2 제3항)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이 지상 3층인 경우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8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u> <u>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u> <u>1. 버스 정류장</u> <u>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u> <u>3. 횡단보도</u> <u>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u> <u>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이 지상 3층인 경우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u>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도시건설국 건축과장 김동욱

[참고자료]

□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2. 8. 4.][법률 제1882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2. 3.>

⑧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2. 2. 3.>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검토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 12. 3., 2005. 10. 7., 2010. 10. 14., 2012. 6. 28., 2012. 10. 31., 2019. 8. 7., 2021. 2. 24.>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 1659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2. 9. 5. ~ 2022. 9. 20.
3. 공고대상 : 153수4991 외 29대 (별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1)

2022. 9. 5.

남 동 구 청



구분	자동차등록 번호	차명	소유자명	등록일	등록사유
1	153수4991	렉서스 ES300h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8.31	소유자 요청
2	65노8787	BMW 750Li	박*규	2022.08.31	소유자 요청
3	57로7942	크루즈 2.0 디젤	김*미	2022.08.30	소유자 요청
4	106소2558	싼타페(SANTAFE)	이*은	2022.08.30	소유자 요청
5	13러5727	BMW X6 M50d	강*석	2022.08.30	소유자 요청
6	66노1060	BMW 320i	이*훈	2022.08.30	소유자 요청
7	06하0978	싼타페(SANTAFE)	신한카드(주)	2022.08.29	소유자 요청
8	37허0976	스포티지	신한카드(주)	2022.08.29	소유자 요청
9	90무7926	이-마이티	정*곤	2022.08.28	소유자 요청
10	54호0324	스파크 1.0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2.08.24	소유자 요청
11	31하5585	싼타페(SANTAFE)	신한카드(주)	2022.08.24	소유자 요청
12	31서3306	i30	유*민	2022.08.17	소유자 요청
13	282무6211	G80	신한카드(주)	2022.08.17	소유자 요청
14	63호6843	K7	메리츠캐피탈(주)	2022.08.16	소유자 요청
15	22구4791	ALTIMA 2.5	전*종	2022.08.11	소유자 요청
16	138조6039	그랜저(GRANDEUR)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2.08.11	소유자 요청
17	29하0175	그랜저(GRANDEUR)	신한카드(주)	2022.08.11	소유자 요청
18	259모2237	A6 45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8.10	소유자 요청
19	100머8083	E300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8.10	소유자 요청
20	27마4411	링크 MKZ	권*	2022.08.09	소유자 요청
21	13마6431	싼타페	이*구	2022.08.09	소유자 요청
22	서울2투891 0	쏘나타	김*재	2022.08.08	소유자 요청
23	24하8567	싼타페(SANTAFE)	신한카드(주)	2022.08.08	소유자 요청

24	160호4324	그랜저 하이브리드(GRANDEUR HYBRID)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8.05	소유자 요청
25	57하7922	그랜저(GRANDEUR)	삼성카드주식회사	2022.08.05	소유자 요청
26	19소3416	스포티지	구*	2022.08.04	소유자 요청
27	49수4855	Passat 2.0 TS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인천지점	2022.08.03	소유자 요청
28	19오0588	카니발 하이리무진	최*영	2022.08.03	소유자 요청
29	384서1712	Q8 50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8.03	소유자 요청
30	128하1998	A5 Sportback 45 TFS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2022.08.03	소유자 요청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666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9.5. ~ 2022.9.20.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강제처리 공고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이륜차 20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

2022년 9월 5일

남 동 구 청 장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2-0012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5.20. ○ 견인일 : 2022.6.17. ○ 보관장소 : (주)한신편차 ○ 방치장소 : 장아산로17 장수해물찜 앞 인도
	2022-0013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5.27. ○ 견인일 : 2022.6.16. ○ 보관장소 : (주)인천편차사업소 ○ 방치장소 : 백범로419-1 인도 위
	2022-0014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3. ○ 견인일 : 2022.6.30. ○ 보관장소 : (주)인천편차사업소 ○ 방치장소 : 장승남로 33번길 23 103동 지하주차장 입구
	2022-0014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9. ○ 견인일 : 2022.7.15. ○ 보관장소 : (주)인천편차사업소 ○ 방치장소 : 성말로53번길9-1
	2022-0015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1. ○ 견인일 : 2022.7.20. ○ 보관장소 : (주)인천편차사업소 ○ 방치장소 :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관
리
번
호

2022-0015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1.
- 견인일 : 2022.7.2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0016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1.
- 견인일 : 2022.7.2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0016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1.
- 견인일 : 2022.7.2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0016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1.
- 견인일 : 2022.7.2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0016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1.
- 견인일 : 2022.7.2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관
리
번
호

2022-0016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1.
- 견인일 : 2022.7.2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0016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2.
- 견인일 : 2022.7.1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68-89 인도 위

2022-0016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2.
- 견인일 : 2022.7.1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701(은봉초등학교 버스정류소 옆) 인도 위

2022-0017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2.
- 견인일 : 2022.7.1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은봉로105번길57
(주)제이에이치테크놀로지 앞 전봇대(8717D454)

2022-0018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9.
- 견인일 : 2022.7.2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뉴서울아파트 106 지하3주차장

관
리
번
호

2022-0018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9
- 견인일 : 2022.7.2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뉴서울아파트 106 지하3주차장

2022-0018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9
- 견인일 : 2022.7.2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2동 188-5 삼성탐스빌 사유지

2022-0018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7.4.
- 견인일 : 2022.8.4.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소래 휴먼시아3단지 305동 앞 자전거 거치대

2022-0018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7.4.
- 견인일 : 2022.8.4.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소래3단지 311동 지하주차장 아래층 계단

2022-0019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7.14.
- 견인일 : 2022.8.1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용천로153번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22-0012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장아산로17 장수해물찜 앞 인도	2022.6.17.	(주)한신폐차	
2	2022-0013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백범로419-1 인도 위	2022.6.16.	(주)인천폐차사업소	
3	2022-0014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장승남로 33번길 23 103동 지하주차장 입구	2022.6.30.	(주)인천폐차사업소	
4	2022-0014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성말로53번길9-1	2022.7.15.	(주)인천폐차사업소	
5	2022-0015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7.20.	(주)인천폐차사업소	
6	2022-0015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7.20.	(주)인천폐차사업소	
7	2022-0016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7.20.	(주)인천폐차사업소	
8	2022-0016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7.20.	(주)인천폐차사업소	
9	2022-0016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7.20.	(주)인천폐차사업소	
10	2022-0016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7.20.	(주)인천폐차사업소	

11	2022-0016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7.20.	(주)인천페차사업소	
12	2022-0016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68-89 인도 위	2022.7.19.	(주)인천페차사업소	
13	2022-0016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701(은봉초등학교 버스정류소 옆) 인도 위	2022.7.19.	(주)인천페차사업소	
14	2022-0017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은봉로105번길57 (주)제이에이치테크놀로지 앞 전봇대(8717D454)	2022.7.19.	(주)인천페차사업소	
15	2022-0018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뉴서울아파트 106 지하3주차장	2022.7.29.	(주)인천페차사업소	
16	2022-0018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뉴서울아파트 106 지하3주차장	2022.7.29.	(주)인천페차사업소	
17	2022-0018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2동 188-5 삼성탑스빌 사유지	2022.7.29.	(주)인천페차사업소	
18	2022-0018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 휴먼시아3단지 305동 앞 자전거 거치대	2022.8.4.	(주)인천페차사업소	
19	2022-0018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3단지 311동 지하주차장 아래층 계단	2022.8.4.	(주)인천페차사업소	
10	2022-0019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용천로153번길	2022.8.10.	(주)인천페차사업소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673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9.5.~ 2022.9.20.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113어9748 외 9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

2022년 9월 5일

남 동 구 청 장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대상

연번	접수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생년월일 (법인/ 사업자)	주소	견인일 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22-00087	113어9748	레인지로버 이보크 2.0D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12 성화그린 201동 주차장	시*순 박*미	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13*, 20*호(거여동)	2022. 4.29.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 -7077
2	2022-00103	15나0810	오피러스	논현동 690-2	(주)디** ***이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10*0동 3*1호(가산동, 월드메르디앙2차)	2022. 5.25.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 -7077
3	2022-00114	24수9446	ALTIMA 2.5	우신아파트 정문 노상주차장	이*호	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번길 3*-9, 40*호(간석동)	2022. 6.16.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 -7077
4	2022-00122	77러7754	봉고 III 코치	도림동 584-52 이면도로	엄*진	61****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2*번길 1*-2*(부개동)	2022. 6.9.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 -7077
5	2022-00124	20모8125	아반떼 (AVANTE)	만수동961-32 인도 위	박*현	8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87번길 2*-1*, 102동 20*호(주안동, 청도스카이뷰)	2022. 6.9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 -7077
6	2022-00129	93로6483	봉고III 플러스네장차	장자북로11-21 장수감리교회 앞 코너 커브길	최*민	80****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25, 10*동 30*호(청학동, 용담마을아파트)	2022. 6.17.	(주)한신폐차	032-590 -6900
7	2022-00131	14더2737	아반떼(AVANTE)	간석로72번길 한양빌라 앞 이면도로	김*형	6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71-*, B동 40*호(간석동, 청양빌라)	2022. 6.21.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 -7077
8	2022-00132	인천남동타 2519	이룬차	장승남로38 골드주얼리 앞 인도	김*환	7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9*, 50*동 80*호(장항동, 호수마을)	2022. 6.20.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 -7077
9	2022-00135	97조2184	포터 II	간석동176-10 썸모델 앞 이면도로	박황현	81****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20*번길 20, 10*동 50*호(각화동, 각화주공아파트)	2022. 6.21.	(주)한신폐차	032-590 -6900
10	2022-00138	경기93루 5422	포터초장축더블캡	남촌동로16번길33-7 노상주차장	박*영	69****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40*번길 31*-1*	2022. 7.12.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 -7077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 - 1674 호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11호(2022. 2. 1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공고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열람 통지가 불가능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116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4. 공 고 기 간 : 2022. 9. 6. ~ 2022. 9. 20.(14일 이상)
5. 공시송달 사유 : 폐문부재 등
6. 공시송달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7. 공시송달 대상

소재지	지 번	지목	호수	편입면적(㎡)		성 명	소 유 자	비고
				전유부	대지권		주 소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 B동)	대	B02호	39.09	24.27/187	이*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호(간석동, ***) (등)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호(간석동, ***)	

8. 열람장소 및 방법 :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방문 또는 전화(☎032-453-2662)

9. 의 견 제 출 : 의견이 있는 공시송달 대상 토지 등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 [별첨 「의견서(양식)」 참조]

10. 기 타

-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생활경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022년도제5회수용재결신청사업열람공고대상

(단위 : 원)

구분	사 업 명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		사업시행자 제시액합계	사업시행자
		필지	면적(㎡)	제시액	건수	제시액	건수	제시액		
1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	78.00	65,676,000	14	1,095,613,280	29	56,487,730	1,417,777,01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생활경제과) 032)453-2662, 김진동

[별지 제1목록]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22수용0079)

수 용 토 지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표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 소
			공 부	실 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4	도	도	78㎡	강O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88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등)인천광역시남동구호구포로888번 길*****동****호(만수동,**아파트)		
							- 이하여백 -		
	토 지 합 계	1필지			78.000	1인		0인	

[별지 제1목록]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22수용0079)

수 용 지 장 물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 격	수량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	주 소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102호	지장물 벽돌조	36.13㎡	김O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서구완정로**번길****동 ***호(마전동,****아파트)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 B01호	지장물 벽돌조	39.09㎡	김O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 *동***호(간석동,**빌라)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 동302호	지장물 벽돌조	36.13㎡	김O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등)인천광역시남동구백범로***번길*** **동***호(만수동,**아파트)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B02호	지장물 벽돌조	39.09㎡	김O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 *동***호(간석동,**빌라)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302호	지장물 벽돌조	36.13㎡	박O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 *동***호(간석동,**빌라)	주식회 사 ** 근저당 권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 (광희동1가, **빌딩) (등)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 (광희동1가, **빌딩)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 동B01호	지장물 벽돌조	39.09㎡	박O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 *동***호(간석동,**빌라)		
8	"	224-605 삼화빌라B	지장물	10.5㎡	"	"		

		동창고	판넬조, 판넬지붕						
					소계(2)건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87 효진빌라B 01호	지장물 벽돌조	36.13㎡	박O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동 ****호(응봉동,*****)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87 효진빌라1 01호	지장물 벽돌조	36.13㎡	엄O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 ***호(간석동,**빌라)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201호	지장물 벽돌조	36.13㎡	이O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미추홀구염전로***번안 길**(도화동)	***** *금고 근저당 권자	광주광역시 동구 참판로 ** (등)광주광역시북구풍향동****-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 동B02호	지장물 벽돌조	39.09㎡	이O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호(간석동, ***) (등)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로**번길**** *호(간석동,***)	**농업 협동조 합 근저당 권자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 (등)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채동선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 동201호	지장물 벽돌조	36.13㎡	이O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 *동***호(간석동,**빌라)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202호	지장물 벽돌조	36.13㎡	임O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 *동***호(간석동,**빌라)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38 꿈에드린 빌라302호	지장물 철근콘크 리트조	75.72㎡	조O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 ***호(간석동,****빌라)			

제1703호

남동구 구보

2022. 9. 6. 화요일

- 이하여백 -

	물건의 합계	14건			13인		3인	

[별지 제1목록]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22수용0079)

수 용 이주정착금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 소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B02호	이주정착금	1식	김O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빌라)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302호	이주정착금	1식	박O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빌라)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 동B01호	이주정착금	1식	박O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빌라)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87 효진빌라10 1호	이주정착금	1식	엄O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호(간석동,**빌라)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 동201호	이주정착금	1식	이O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빌라)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 동202호	이주정착금	1식	임O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빌라)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38 꿈에드린빌 라302호	이주정착금	1식	조O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호(간석동,****빌라)		
						- 이하여백 -		
	물건의 합계	7건			7인		0인	

[별지 제1목록]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22수용0079)

수 용 주거이전비 의 표 시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명/ 관리의 종류	주 소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 B02호	주거이전비 (소유자)	1식	김O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빌라)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 302호	주거이전비 (소유자)	1식	박O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빌라)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동 B01호	주거이전비 (소유자)	1식	박O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빌라)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 102호	주거이전비 (세입자)	1식	박*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빌라)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동 B02호	주거이전비 (세입자)	1식	박O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빌라)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87 효진빌라101 호	주거이전비 (소유자)	1식	엄O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호(간석동,**빌라)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동 302호	주거이전비 (세입자)	1식	이O욱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빌라)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동 201호	주거이전비 (소유자)	1식	이O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빌라)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 202호	주거이전비 (소유자)	1식	임O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제1703호

남동구 구보

2022. 9. 6. 화요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빌라)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38 꿈에드린빌라 302호	주거이전비 (소유자)	1식	조O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호(간석동,****빌라)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 201호	주거이전비 (세입자)	1식	황O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동,**빌라)		
						- 이하여백 -		
	물건의 합계	11건			11인		0인	

[별지 제1목록]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22수용0079)

수 용 이사비 의 표 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주소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 B02호	이사비(소유자)	1식	김O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 동,**빌라)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 302호	이사비(소유자)	1식	박O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 동,**빌라)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동 B01호	이사비(소유자)	1식	박O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 동,**빌라)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 102호	이사비(세입자)	1식	박O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 동,**빌라)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동 B02호	이사비(세입자)	1식	박O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 동,**빌라)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87 효진빌라101 호	이사비(소유자)	1식	엄O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호(간석동, **빌라)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605 삼화빌라B동 302호	이사비(세입자)	1식	이O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 동,**빌라)		
7	인천광역시	224-605	이사비(소유자)	1식	이O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 *****호		

제1703호

남동구 구보

2022. 9. 6. 화요일

	남동구 간석동	삼화빌라B동 201호				***** (수서동, ****오피스텔)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 동,**빌라)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 202호	이사비(소유자)	1식	임O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 동,**빌라)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38 꿈에드린빌라 302호	이사비(소유자)	1식	조O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호(간석동, ****빌라)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3 삼화빌라A동 201호	이사비(세입자)	1식	황O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등)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로**번길**~**동***호(간석 동,**빌라)		
						- 이하여백 -		
	물건의 합계	11건			11인		0인	

의견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견		
4.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동구청장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675호

「남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5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약사항 수립 및 이행과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 주요내용

- 관리체계(안 제3조)
- 공약사업 확정(안 제4조)
-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안 제5조~제7조)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안 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 453-2051, FAX 453-20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남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구청장 공약사항 수립 및 이행과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공약이행평가 관련 주민참여 기반 마련으로 공약이행 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도 증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공약사업의 관리체계 및 공약사항확정: 안 제3조~제4조
-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행·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정보공개 평가’ 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

남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 주관부서의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실천계획은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항 확정 후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사전에 주관부서에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남동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자문
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민·사회단체원·대학교수 등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 하고
구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⑤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⑦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과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외부평가 협조)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 기 동

[참고자료]

붙임1. 평가사업안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1. 사업 개요 및 내용

- 사 업 명 :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 대 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모니터링 : 2022년 2월 14일 ~ 3월 4일
- 주 관 :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평가대상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 평가내용 : 지자체 스스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이행자료 (2021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
- 조사방법 : 사업고시 공문발송 이후 홈페이지 모니터 및 공개내용 분석
- 표출방식 : SA, A, B, C, D 등급별 표출 (홈페이지에 공약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불통’으로, 공약정보는 있으나 최근 이행정보가 부족한 경우 ‘D등급’으로 표출)
- 평가분야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공약이행)활동 관련 정보
 -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만점) : 선거당시 약속한 공약 이행 완료는 얼마나 진행 되었는가?
 - [2] 2021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만점) : 선거당시 약속한 공약의 2021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
 - [3] 주민소통 분야(100점 만점) : 공약이행현황이 정확히 공개되고 있으며, 공약이행 및 평가 과정에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의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가?
 - [4] 웹소통 분야 (Pass/Fail) :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확히 공개되고 있으며 주민참여가 용이한가?
- 접근성(40점)+ 정확성(20점)+ 독립성(20점)+ 적실성(10점)+ 참여성(10점)
 - [5] 일치도 분야 (Pass/Fail) : 선거공보공약 및 공약실천계획서와 현재 공개된 공약 내용이 일치하는가?

[3] 주민소통 분야(100점 만점) 평가 방식 : 5개 지표별 20점 척도 평가

분야	지 표	배 점
주민소통 분야	공약평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조례, 규칙, 훈령, 예규)*	20점
	온택트 방식 직접 민주주의 요소 여부(E·vote, E·poll, E·suggest)	20점
	동원형인가?	20점
	참여형인가?	20점
	추첨형인가?	20점

* ‘공약평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 세부 기준 (20점 만점)

구 분		배 점
형태	제도 기반 성격	조례 5점, 규칙 4점, 훈령 3점, 예규 2점, 지침 1점
내용	공약사항 확정, 실천계획 완료 기간	있음 3점, 없음 0점
	자체평가주기	있음 2점, 없음 0점
	평가단 구성방법	추첨형 10점, 공모형 7점, 위촉형 5점, 없음 0점
	시민평가단 규모	있음 0점, 없음 -1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업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자문
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③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 내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과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 및 구민 참여)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와 구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 및 구민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과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676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6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정원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1,313명 ⇒ 1,330명 (증 17명)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제4조 별표 3) 일부 변경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313→1,330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08→1,325					
2급	1	1				
4급	8	6	1	1		
5급	69	37→38	2	9→8	1	20
6급 이하 계	1,230→1,247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
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 453-2052, FAX 453-20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정원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1,313명 ⇒ 1,330명 (증 17명)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제4조 별표 3) 일부 변경

기 관 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 국	직 속 기 관	사업 소	동
총 계	1,313→1,330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08→1,325					
2급	1	1				
4급	8	6	1	1		
5급	69	37→38	2	9→8	1	20
6급 이하 계	1,230→1,247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13명”을 “1,3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85명”을 “1,30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313명”을 “1,33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1,330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25					
2급	1	1				
4급	8	6	1	1		
5급	69	38	2	8	1	20
6급 이하 계	1,247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u>1,313명</u>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1,330명</u> ----- -----.
1. 집행기관 : <u>1,285명</u>	1. ----- <u>1,302명</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총계 : <u>1,313명</u>	3. ----- <u>1,330명</u>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공무원 총 정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나. 관련 조문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순 증 : 1,313명 → 1,330명(17명 증원)
- 2022년 예산의 직급별 인건비(기본급, 수당) 및 물건비(직급보조비) 등 적용

나. 추계 결과

- 인건비 3,856,912천원(2022년 ~ 2026년)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 기 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개월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48,264	906,559	920,157	933,960	947,969	3,856,912
재원 조달		148,264	906,559	920,157	933,960	947,969	3,856,91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조정교부금						
	소 계	148,264	906,559	920,157	933,960	947,969	3,856,912
	지방세	148,264	906,559	920,157	933,960	947,969	3,856,912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연도별 임금인상율은 1.5%로 가정함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677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6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증감
구 분 청	6국 2실 1담당관 34과	6국 2실 35과	증) 1과 감) 1담당관
의회사무국	1사무국	1사무국	
직속기관	4과 1센터	3과 1센터	감) 1과
사업소	1사업소	1사업소	
동 주민센터	20동	20동	

○ 국 조정

- (명칭변경) 자치행정국 → 행정국 / 주민복지국 → 복지국 / 도시건설국 → 도시국

○ 부서 조정

- (명칭변경) 대변인 → 홍보실 / 미디어정보과 → 정보통신과 / 세무과 → 세무1과 / 세입징수과 → 세무2과 / 도시경관과 → 도시디자인과 / 공영개발과 → 미래전략과 / 건설과 → 도로과 / 방재하수과 → 치수과
- (폐 지) 소통협력담당관

- 부서 소속 변경 : 도시디자인과 (환경교통국 → 도시국)
미래전략과 (도시국 → 정책기획국)
식품위생과 (보건소 → 환경교통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 453-2052, FAX 453-20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증감
구 본 청	6국 2실 1담당관 34과	6국 2실 35과	증) 1과 감) 1담당관
의회사무국	1사무국	1사무국	
직속기관	4과 1센터	3과 1센터	감) 1과
사업소	1사업소	1사업소	
동 주민센터	20동	20동	

○ 국 조정

- (명칭변경) 자치행정국 → 행정국 / 주민복지국 → 복지국 /
도시건설국 → 도시국

○ 부서 조정

- (명칭변경) 대변인 → 홍보실 / 미디어정보과 → 정보통신과 /
세무과 → 세무1과 / 세입징수과 → 세무2과 /
도시경관과 → 도시디자인과 / 공영개발과 → 미래전략과 /
건설과 → 도로과 / 방재하수과 → 치수과
- (폐 지) 소통협력담당관

○ 부서 소속 변경 : 도시디자인과 (환경교통국 → 도시국)

미래전략과 (도시국 → 정책기획국)

식품위생과 (보건소 → 환경교통국)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실·담당관·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3조 중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을 “홍보실”로,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을 “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국”으로, “도시건설국”을 “도시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대변인)”을 “(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변인”을 “홍보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셜미디어 운영사무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도로과, 치수과,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및 공동주택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무
2. 도로, 도로조명 시설물 관리
3.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방재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 지하수,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5.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7.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보전에 관한 사무
9.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11.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의 허가·신고·사용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대장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6. 주거급여사업에 관한 사무

제6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로, “미디어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8호 및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래 국가어항 개발 및 소래 정비사업 추진
9.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제7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를 “행정국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제8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세무과, 세입징수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주민복지국)”을 “(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및 식품위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
18.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
19.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를 삽입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제2항 중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및 식품위생과”를 “건강증진과 및 치매정신건강과”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사업소”를 삽입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을 삽입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을 “홍보실”로,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민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을 “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국”으로 한다.

②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국장

③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을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을 “행정국장, 복지

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⑨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⑩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미디어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건설과”를 “도로과”로 한다.

⑪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세입징수과”를 “세무2과”로 “건설과”를 “도로과”로 “도시경관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하고,

별표 3 중 “도시경관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한다.

⑫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방재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⑬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세입징수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세무과장, 세입징수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⑭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⑮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 세입징수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장 및 실·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 실·과장-----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대변인</u> , <u>소통협력담당관</u> , <u>감사실</u> , <u>정책기획국</u> , <u>자치행정국</u> , <u>재정경제국</u> , <u>주민복지국</u> , <u>환경교통국</u> 및 <u>도시건설국</u> 을 둔다.	제3조(실·국의 설치) ----- <u>홍보실</u> ----- <u>행정국</u> , <u>재정경제국</u> , <u>복지국</u> ----- <u>도시국</u> -----.
제4조(대변인) <u>대변인</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u>홍보실</u>) <u>홍보실장</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소셜미디어 운영사무</u>
4. ~ 6. (생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5조(소통협력담당관) <u>소통협력담당관</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제>
1. <u>구민소통 계획 수립 및 총괄</u>	
2. <u>소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u>	

3. 갈등관리 관련 업무 총괄

4. 집단민원, 직소민원 응대 및 조정

5. 주민고충, 집단민원 주무부서 지정 및 관리

제6조 (생략)

제7조(정책기획국) ① 정책기획국에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및 미디어정보과를 둔다.

② 정책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8. ~ 15. (생략)

16. 소셜미디어 운영사무

17. · 18. (생략)

제8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민원봉사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제5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6조(정책기획국) ① -----
--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 정보통신과-----
---.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소래 국가어항 개발 및 소래 정비사업 추진

9.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10. ~ 17. (현행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삭제>

18. · 19. (현행 제17호 및 제18호와 같음)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

② 행정국장-----
-----.

1. ~ 9. (현행과 같음)

10. ~ 13. (생 략)

14. ~ 17. (생 략)

18. ~ 21. (생 략)

제9조(재정경제국) ① 재정경제국
에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및 농
축수산과를 둔다.

② (생 략)

제10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
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
동복지과 및 보육정책과를 둔
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신 설>

14. ~ 17. (현행 제10호부터 제
13호까지와 같음)

10. ~ 13. (현행 제14호부터 제
17호까지와 같음)

18. ~ 21. (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경제국) ① -----
----- 세무1과, 세무2과---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복지국) ① 복지국-----

--.

② 복지국장-----
-----.

1. ~ 13. (현행과 같음)

제11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도로
과, 치수과, 도시재생과, 도시디
자인과, 건축과 및 공동주택과
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도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에 관한사무

2. 도로, 도로조명 시설물 관리

3.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방재

제11조(환경교통국) ① 환경교통국에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둔다.

② 환경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 지하수,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5.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7.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 보전에 관한 사무
9.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11.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의 허가·신고·사용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대장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6. 주거급여사업에 관한 사무

제10조(환경교통국) ① -----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및 식품위생과-----
--.

② -----
-----.

1. ~ 8. (생략)

9.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관
한 사항

11.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신설>

12. ~ 19. (생략)

제12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
국에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건설과, 방재하수과, 건축과 및
공동주택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 보전에 관한 사무

5. 소래 국가어항 개발 및 소래
정비사업 추진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7.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무

18.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
식품 관리에 관한 사무

19.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9. ~ 16. (현행 제12호부터 제1
9호까지와 같음)

<삭제>

6.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7. 도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무
 8. 도로, 도로조명 시설물 관리
 9.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방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하천, 지하수,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11. 건축물의 허가·신고·사용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대장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
 1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5. 주거급여사업에 관한 사무
-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신 설>

제13조(설치) ① (생 략)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및 식품위생과를 두고 의료취약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③ (생 략)

제14조 · 제15조 (생 략)

제4장 사업소

<신 설>

제16조 ~ 제18조 (생 략)

<삭 제>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제12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건강증진과 및 치매정신건강과-----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삭 제>

제4장 사업소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6조부

<u>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u> <u><신 설></u> <u>제19조</u> ~ <u>제21조</u> (생략)	터 제18조까지와 같음) <u><삭 제></u> <u>제5장 하부 행정기관(동)</u> <u>제18조</u> ~ <u>제20조</u>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개정안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
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
략
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678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6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소 소속 부서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제2조 별표 2) 삭제
 - 보건소 식품위생과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식품위생과 소관사무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 453-2052, FAX 453-2059)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17조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소 소속 부서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제2조 별표 2) 삭제
 - 보건소 식품위생과를 구 본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식품위생과 소관사무 삭제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휴업·폐업 신고 다. 시정명령 등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마.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바.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 사. 의료지도원 임명 아.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자. 과징금 처분 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92조	보건 소장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나. 지도·감독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3.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9조	
	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등 나. 치과기공소 폐업 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의3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나.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 신고 수리 다. 안경업소의 지도·감독 라. 안경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개설 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보건 소장
	6.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가. 약국 개설등록 나. 폐업, 휴업, 재개업 및 변경신고 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76조	
	7. 대마재배에 관한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8.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나.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다. 과징금 처분 라. 청문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9.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권한 가. 시체해부 나. 시체해부 명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10.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업무 나.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업무 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관한 업무 라. 과태료 부과징수 마. 금연을 위한 조치 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사. 보건교육의 실시 등 아.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자.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차.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업무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카.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제19조	보건 소장
	11. 감염병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나.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다.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마.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바.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 내성감시 사. 건강진단 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자.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차. 오염장소등의 소독조치 카. 감염병의 예방조치 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파.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하.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거.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너.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등 더.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37조	
	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다. 소독업무의 대행 명령 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 마. 영업의 정지명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9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 나. 입원명령 다. 결핵환자등의 의료 라. 결핵 집단 발생시의 조치 마. 결핵검진 바.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결핵예방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9조	보건 소장
	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수립 나. 검진 및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15.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증명서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마.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6.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신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 관리 등 다. 피임약제 등의 보급 라. 과태료 부과·징수	「모자보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7. 암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암관리법」 제5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8.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나. 비용의 지원	「치매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제18조	보건 소장
	19.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 건강진단 실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3조	
	20.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지도 및 보고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11조	
	2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9조	
	다.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	같은 법 제20조	
	라.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마.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등	같은 법 제32조	
	바. 청문	같은 법 제44조 및 제62조	
	사.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	같은 법 제53조	
	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같은 법 제54조, 제56조 및 제57조	
	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같은 법 제59조 및 제64조	
	차. 외래치료 명령 및 지원 등	같은 법 제66조	
	카.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89조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22. 의료인 단체 설치신고	「의료법」 제28조	
	23.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사회건강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24. 산후조리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보건 소장
	25.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26.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 실시 나. 급여비용의 예탁	「의료급여법」 제14조 같은 법 제27조	
	2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등 나. 검사결과 통보 수리 및 등록대장 관리 다. 시정 명령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의료법」 제63조	
	28.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나.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 다.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등 라. 폐기 명령 등 마. 등록 취소, 청문 바. 약사 감시원의 임명 및 배치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같은 법 제4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2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라.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 응급 의료시설 설치·운영 마.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바. 구급차등의 사용금지 사. 구급차등의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아. 의료기관 및 구급차운용자의 업무정지등 처분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보건 소장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개정안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
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
략
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 - 18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2.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5일로 신설(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 ~ 9. 7.(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2,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60
----------	------

발의연월일 : 2022년 9월 2일
발 의 자 : 반미선의원
찬 성 자 : 전용호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5일로 신설(안 제12조제3항제1호)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제12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u>10년</u>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③ ----- <u>5년</u> ----- ----- ----- ----- ----- ----- -----.
<신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 3. (생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강 필 모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 - 19호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 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2.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21.1.12.) 및 시행('22.1.13)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 ~ 9. 7.(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덕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61
----------	------

발의연월일 : 2022년 9월 2일
발 의 자 : 장덕수의원
찬 성 자 : 반미선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21.1.12.) 및 시행 ('22.1.13)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 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46 조----- ----- ----- ----- ----- -----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강 필 모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 - 20호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2.

남동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로 구성되어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보행자길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노상주차장 조성 시에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용어의 뜻 추가 (안 제2조 제4호)
- 보행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안 제3조)
- 노상주차장 설치시 보행권 확보방안 신설 (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 ~ 9. 8.(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65
----------	------

발의연월일 : 2022년 9월 2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로 구성되어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 이므로

보행자길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노상주차장 조성 시에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뜻 추가 (안 제2조 제4호)
- 보행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안 제3조)
- 노상주차장 설치시 보행권 확보방안 신설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8조, 제27조
-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주차장법」 제7조 1항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3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보행권 보장의 기본원칙)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구청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차장법」 제7조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보행자길”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u>제3조(보행권 보장의 기본원칙)</u> <u>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u> 1. <u>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u> 2. <u>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3. <u>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u>

제3조 ~ 제7조 (생 략)

<신 설>

제8조 (생 략)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 제8조 (현행 제3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9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구청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차장법」 제 7조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가. 관련 조문**

- 제3조(보행권 보장의 기본원칙)
- 제9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나. 비용발생 요인

-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 확보에 따른 사업비 발생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보행로 설치 사업비 기준: 180천원/㎡
- 사업규모: 노상주차장 개소당 A=10㎡
- 매년 보행로 개선 사업 추진 가정(5개년 총 5,000㎡)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사 업 비	180,000	182,000	184,000	186,000	188,000	92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지방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4. 부대의견**

- 실제 사업 규모 및 대상지 여건에 따른 비용산출 필요

작성자 : 도시건설국 건설과장 오영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80,000	182,000	184,000	186,000	188,000	920,000	
보행환경개선사업		180,000	182,000	184,000	186,000	188,000	920,000	
재원 조달		180,000	182,000	184,000	186,000	188,000	92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80,000	182,000	184,000	186,000	188,000	920,000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

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

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6. 8.]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1. 6. 8.]

□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6.4.>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 보행유발 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현황
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 현황
5. 소음, 악취, 분진 등 보행자 피해 유발 요소
6. 보행환경이 뒤떨어진 지역 현황
7. 그 밖에 보행자길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역계획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지역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6.4.>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6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7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구간별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로, 교통 관련 인천광역시에 소속된 공무원
2. 인천지방경찰청 또는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등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 구간별로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 개정 2021.6.4.]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4.]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6.4.]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6.4.]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및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6.4.]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2.>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 - 21호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2.

남동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에 종합적인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조항 신설 (안 제6조제3호, 제4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 ~ 9. 8.(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64
----------	------

발의년월일 : 2022년 9월 2일

발 의 자 : 장덕수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에 종합적인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조항 신설 (안 제6조제3호, 제4호)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
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 제공</u>
<u><신설></u>	<u>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u>
3. ~ 7. (생략)	5. ~ 9.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개정
 - 3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
 - 5호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미만인 경우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미만
-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5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주민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참고자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 - 22 호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2.

남동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 ~ 9. 8.(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3
----------	------

발의년월일 : 2022년 9월2일

공동발의자 : 장덕수·반미선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미만인 경우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따른 예방 발생 비용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종 시책·지원사업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조례안 제6조(교육 및 홍보)에 따른 교육, 홍보에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교육의 경우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1.3.1.)」에 의하면 4시간 2회 강사로 1,100천원(일반1급), 원고료 240천원으로 총 1,340천원 비용 예상됨)

작성자 : 주민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참고자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톱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톱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톱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 - 23호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2.

남동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안 제6조)
-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장기등 기증사업 홍보(안 제7조~제8조)
- 예우 및 지원(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0조)
 - 비밀의 유지, 표창(안 제11조~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 ~ 9. 8.(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66
----------	------

발의년월일 : 2022년 9월 2일

발 의 자 : 이정순 의원

찬 성 자 : 장덕수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안 제6조)
-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장기등 기증사업 홍보(안 제7조~제8조)
- 예우 및 지원(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0조)
- 비밀의 유지, 표창(안 제11조~제12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및 제32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2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 ·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 · 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 · 운영한다.

제8조(사업 홍보)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승강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명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홍보)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함에 따른 홍보물 제작 비용 발생 예상
- 「남동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예우 및 지원) 제1항제1호 및 제2호
 - 장기기증(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조치에 따른 세입 감소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구분	세부내역	추계액	비고
세출	장기기증 홍보물 제작	5,000원×1,000개=5,000,000원	순증가액
세입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500원×25,000명=12,500,000원	순감소액
	구 작영(위탁)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1,000원×25,000명=25,000,000원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42,500,000원)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참고자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1. 12. 21.>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홍보 및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0. 24.]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장기등기증자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2021. 12. 21.>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11.>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7조(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추진
2. 조직의 기증·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
3. 조직기증희망자 표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산망시스템의 구축·관리주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 - 24호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2.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구현 및 행정의 효율성, 신뢰성 제고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으로 고품질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의 사항(안 제5조)
- 책임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행계획 수립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 수집·관리,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 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분석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우수사례 발굴,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9조)
- 평가 및 표창,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3. 입법 예고 기간 : 2022. 9. 2. ~ 9. 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승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년 월 일

발 의 자 : 정승환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명

☐ 제안이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구현 및 행정의 효율성, 신뢰성 제고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으로 고품질 맞춤형 주민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의 사항(안 제5조)
- 책임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행계획 수립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 수집·관리,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 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분석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우수사례 발굴,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9조)
- 평가 및 표창,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22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정책수립 및 의

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편리하고 보편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사무

③ 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와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

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3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행정·복지·안전·환경·관광·의료·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4조(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분석) 구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를 통한 사업의 집행과 평가 도입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데이터를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의 지역적·환경적·문화적·인구학적(성별·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구청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 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8조(우수사례 발굴)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용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조례안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19조에 따라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나 정보시스템 구축범위 및 사업대상이 확정되지 않아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참고자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데이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20. 6. 9.>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22-8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9. 20.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9. 5. ~ 2022. 9. 19.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반음식점	2008-0199470	독배기 이탈리아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97-15, 대건빌딩 3층 302호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8-03	2022-09-20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9. 19.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2. 9. 5.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22 - 92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남동구 만수동 산1-31번지 일원 등에 신설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좌 표	
	X(m)	Y(m)
	붙 임	
기 준 원 점 명	세계측지계좌표	
소 재 지	남동구 만수동 산1-31번지 일원	
설 치 일 자	붙임참조	
표 지 재 질	붙임참조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신설(4점)	

붙임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별도첨부) 1부. 끝.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

연번	구분	기준점명	세계		중부		가리		소재지	설치일(관측일)	표지재질	비고
			X	Y	X	Y	X	Y				
1	지적도근점	8543	540913.15	176671.50					만수동 산1-31	2022.06.16.	황동	신설
2	지적도근점	8544	540947.66	176644.35					만수동 산1-31	2022.06.16.	황동	신설
3	지적도근점	8545	541021.33	176636.66					만수동 산1-31	2022.06.16.	PVC	신설
4	지적도근점	8546	541057.93	176599.13					만수동 산1-31	2022.06.16.	황동	신설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9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6일

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82 (논현동) 외 3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6번길 39 (간석동)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4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 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9-2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82 (논현동)	2009.7.6.	청량산 아랫마을에 능이 있었다는 것에 유래하여 제명	2022.9.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청능대로 58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82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82-4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536 (남촌동)	2009.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22.9.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 53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36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7-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375번길 94 (논현동)	2009.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6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9.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375번길 9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4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0-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3-8 (운연동)	2009.11.16.	만의골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22.9.6.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의골로 3-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8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6번길 39 (간석동)	2022.9.6.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5번길 4 (간석동)	2022.9.6.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